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원(이하 “JST 공유대학원”이라 한다)은 전북지역 산업과 밀접한 융복합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극히 성실하게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여 전북지역 학문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ST 공유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시험운영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정 외에 JST 공유대학원과 전북지역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공동 석·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학생정원) ① JST 공유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보며, 그 수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 전북지역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정하는 위탁학생

③ JST 공유대학원은 융복합대학원 과정으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및 농생명·바이오 등 3개 학부 전공을 둔다.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JST 공유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 전 1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JST 공유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JST 공유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가. JST 공유대학원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학생설계융합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

나. 4년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전북지역 연구원 및 산업체에서 정하는 위탁학생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JST 공유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다.

제6조(재입학) JST 공유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나 중도 수료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모집단위별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 외에 필답(영어·전공)고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학지원서류) 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JST 공유대학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학생설계융복합전공 출신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다.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 과정

- 가. 입학원서 1부
- 나.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다.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휴학) ①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휴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생의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학점 등

제10조(수업연한) JST 공유대학원 수업연한은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학연한) JST 공유대학원 재학연한은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업일수) JST 공유대학원 수업일수는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업) JST 공유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① JST 공유대학원 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JST 공유대학에 개설된 전공분야별 고급전공심화 2과목 이상 수강하되, JST 공유대학에서 수강한 고급전공심화 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석·박사 연구주제설정에 대한 세미나-1, 석·박사 연구주제수행에 관련된 세미나-2 및 석·박사 연구주제 결과와 관련된 세미나-3 교과목 등을 이수해야 하며,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소속 참여대학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5조(성적평가) JST 공유대학원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위지도교수 및 교과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정한다.

제16조(이수학점) ① JST 공유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교과학점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JST 공유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논문연구학점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③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수료 등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전적학점의 인정)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전적학점의 인정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학기당 취득학점수)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수는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과정)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석·박사학위 연구 과정은 산학연합업트랙-1의 POC(Proof Of Concept. 이하 “POC”라 한다) Lab 프로그램과 산학연합업트랙-2 Business Lab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제19조의2(산학연합업트랙-1) JST 공유대학원 일반대학원생의 POC Lab 프로그램으로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미래 관심있는 분야들과 문제해결에 어려운 분야들의 연구 과정이다.

제19조의3(산학연합업트랙-2) JST 공유대학원 위탁대학원생의 Business Lab 프로그램으로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 과정이다.

제20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각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21조(수료증서) JST 공유대학원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JST 공유대학원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 장 학위수여

제22조(석사학위 수여) ①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석사학위는 JST 공유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술 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석사학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석사학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석사학위 논문심사)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박사학위 수여) 소정의 과정(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포함)을 이수한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박사학위는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박사학위 논문심사) JST 공유대학원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위탁생

제28조(공개강좌) ① JST 공유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29조(논문연구생 및 연구생) ① JST 공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위 취득 시까지 논문연구생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4년제 대학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JST 공유대학원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생) 전북지역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재직자로서 소속의 장이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석사과정에만하여 수탁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과정 소정의 시험(입학, 외국어 및 종합시험)과 논문심사 절차를 거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 제32조(지도교수) ① JST 공유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 선정,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지원금 및 연구비 보조

- 제33조(장학) JST 공유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혁신인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체 등 관련 연구 참여자의 경우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8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 제34조(직제와 대학원위원회) JST 공유대학원의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학생 징계

- 제35조(징계) ① JST 공유대학원 학생 징계는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의 징계조치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3.10.18. 규정 제3호)

- ① JST 공유대학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학년, 학기, 학업일, 휴업일, 휴학, 퇴학, 성적, 납입금, 상벌, 기타 본 규정에 특히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속 참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별표1]

○ JST 공유대학원 : 석·박사 연구과정 입학정원

학부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미래수송기기 학부	친환경미래모빌리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수송기기 관련 교과목 -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전공분야별 2개 이상 고급전공심화 교과목 개설 - 전공분야별 고급전공심화 2과목 수강/이수 인정 - 연구주제설정, 연구주제수행, 연구주제결과 등의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세미나-1, 세미나-2, 세미나-3 등의 필수 교과목 개설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학부	이차전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신산업 관련 교과목 -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전공분야별 2개 이상 고급전공심화 교과목 개설 - 전공분야별 고급전공심화 2과목 수강/이수 인정 - 연구주제설정, 연구주제수행, 연구주제결과 등의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세미나-1, 세미나-2, 세미나-3 등의 필수 교과목 개설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농생명·바이오 학부	디지털농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바이오 관련 교과목 -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전공분야별 2개 이상 고급전공심화 교과목 개설 - 전공분야별 고급전공심화 2과목 수강/이수 인정 - 연구주제설정, 연구주제수행, 연구주제결과 등의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세미나-1, 세미나-2, 세미나-3 등의 필수 교과목 개설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 모집정원은 전공 분야별 지원자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